

신청안내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 (스마트공장 최초 도입)

- ▶ 신청기간 :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(410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- ▶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
2	견적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및 비교견적 2건 (총 3건)
3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※ 관련양식은 <http://bms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 ※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(bms.smart-factory.kr)
 ※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(수요-공급기업) → 로그인 후 "온라인 사업신청" 화면 → 온라인 신청 (일반탭, 공급기업탭,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생산현장디지털화 (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또는 글로벌화)

- ▶ 신청기간 :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(122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- ▶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 1부
2	가격제안서(공급기업 작성) 1부
3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※ 관련양식은 <http://it.smlplatform.go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 ※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<https://it.smlplatform.go.kr>)
 ※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 (제출서류 업로드)

문의처

▶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 싶으시다면?

구분	기관명	연락처
공고내용 문의	중소벤처기업부	국번없이 1357
사업 문의	스마트공장 구축지원	02-6050-2777(일반문의) 02-6050-2778(온라인접수)
	생산현장 디지털화	1644-1736(일반문의) 042-388-0757, 0760
로봇활용 중소 제조공정 혁신지원	한국로봇산업진흥원	053-210-9543
정책문의	중소벤처기업부	042-481-4459, 4406, 4438, 4496

2018년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안내

공장을 똑똑하게!
스마트공장지원사업



스마트공장 정의와 수준

스마트공장의 정의

▶ ICT,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되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스마트제품을 적시(고객이 요구하는 시점)에 생산하여 적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인공지능형 공장입니다

스마트공장의 범위

▶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,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하며, 수직적으로는 현장자동화, 제어자동화, 응용 시스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스마트공장의 수준

▶ ICT 활용정도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합니다.

수준(Level)	개념 및 유형
기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를 디지털화(전산데이터)하는 수준 (바코드, RFID 등으로 생산정보 수집 및 파악)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
중간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산설비, 공정, 자재 및 제품 정보가 실시간 수집·분석되는 수준 (생산정보를 통한 품질분석 및 생산계획 수립) 수집·분석한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 실시
중간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집·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여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는 수준 분야별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연동, 협력사까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
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oT, CPS 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서비스 공장

스마트공장을 처음 도입하신다면?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신청!

KOSF **민생 안정 스마트공장 추진단**

사업 개요

- ▶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지원내용

- ▶ 제품설계·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
솔루션 분야	지원기준
현장자동화/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·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(예, MES)과 연결되어야 함
제품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(예, PLM)
공급사슬 관리 최적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산설비, 공정, 자재 및 제품 정보가 실시간 수집/분석되는 수준 :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하고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음 · 수집/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실시
기업자원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(예, ERP) ·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이어야 함

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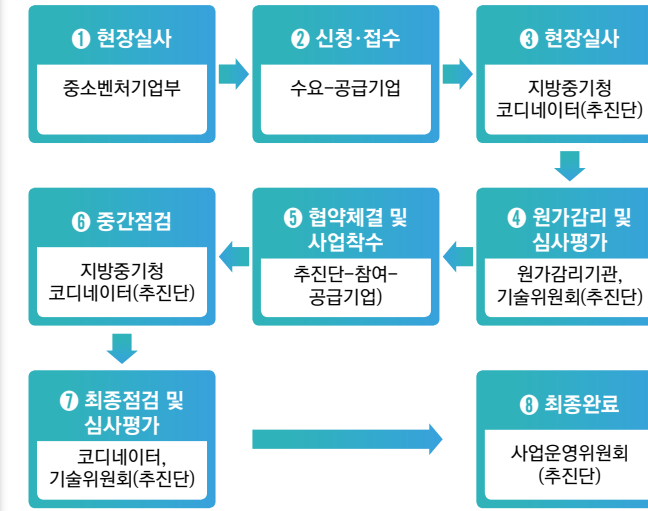
- ▶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이 사업신청(공급기업 사전 매칭)
 -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- *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참여 가능)

지원조건

※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 - 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 - *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지원 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- ▶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·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-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참여 가능)

기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또는 글로벌화를 원하시면

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신청!

TIPA **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**

사업 개요

- 고도화 과제**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
- 글로벌화 과제**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·사업화 및 판로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기업 글로벌 역량강화

지원내용

- 고도화 과제**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등을 지원
 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-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 등
 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- 글로벌화 과제**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, 구축된 시스템 및 도입기업 생산품의 제품화·글로벌화 지원
 -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의 판매·수출을 위한 제품화 진행
 - 개발된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도입기업 생산품의 사업화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
신청자격

- ▶ 고도화, 글로벌화 과제 모두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
구분	자격조건
도입기업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공급기업	·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(고도화 과제 해당)
컨소시엄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	·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지원조건

※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**고도화 과제** 최대 1억원,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*
 - *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% 매칭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매칭

【매칭비율 예시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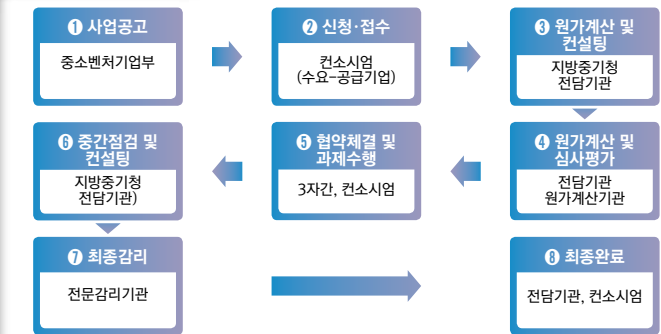
총사업비	정부지원금 (최대 1억원)	기업부담금
① 1억원	0.5억(50%)	0.5억(50%)
	1억원	0.5억(50%)
② 2억원	1억원(초과분)	0.7억(70%)
	소계	1.2억(60%)

- ▶ **글로벌화 과제** 최대 1.8억원, 총사업비의 60% 지원(도입·공급기업 동시부담)

구분	정부지원금	도입기업 부담금	공급기업 부담금
매칭비율	60% (최대 1.8억원)	20%	20%

* 총사업비 3억 초과 금액에 대한 부담률은 컨소시엄 협의 하에 결정

지원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- ▶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·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등 부적합업종 및 영위기업	·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
·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	· 이 안 되는 업체